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9 발의연월일: 2023. 5. 17.

발 의 자: 강득구·김병욱·최혜영

허 영·김민석·민병덕

신정훈 • 민형배 • 이성만

전재수 · 김남국 · 안규백

안민석 · 강준현 · 홍기원

이정문 · 김수흥 · 임종성

김철민 • 전용기 • 김영호

최기상 • 이학영 • 김상희

김홍걸 · 김의겸 · 진성준

유정주 • 박영순 • 임호선

용혜인 • 조오섭 • 김민철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4항).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으로, "알릴"을 "홍보하여참여가 활성화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u>인터넷 홈페이</u>	<u>휴</u> 대전화를 이용		
<u>지에 게시하고,</u> 그 밖에 다양한	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u>알릴</u> 수	페이지 게시 및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홍보하</u>		
	여 참여가 활성화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